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주간 입법 동향

Vol. 74 (2022. 8. 8 ~ 8. 12)

DR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기업승무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학생 정원 확대 △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 완화, 겸임 또는 겸직 가능한 제도 마련 등.
	조세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 2030년으로 연장,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조정 △기업이 맞춤형 인력양성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 자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에서 공제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등.
국회 계류안	IP	③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적범'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법을 '고의범'으로 개정, 처벌 수위도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경우 유기징역 3년 이상에서 유기징역 5년 이상으로 늘리고, 벌금도 15억에서 20억으로 상향해 병과하기로 함.
공포 법령	행정/노무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두도록 함.
입법/ 행정예고	조세	⑤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기본 면세범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 술의 면세 한도는 현재 1병(1L 400달러 이하)에서 2병(2L 400달러 이하)로 확대.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양항자 (무소속)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협력 또는 경쟁 국가로서의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약 68조원(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 2025'를 발표하면서 약 2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고 반도체 기업에게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며, 대만도 매년 1만여명 규모의 신규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사 정원의 10퍼센트와 석·박사 정원의 15퍼센트를 확대하는 등 반도체 관련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제 안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 2022년 8월 4일에 시행되는 현행법은 경쟁국들의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관련 산업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에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나.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다.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제2호 신설).	아시아경제 22.08.02 반도체 인재 석·박사 정원 기준 푼다… 교원 임용 자격 완화도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0210330195662	22.08.04.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라.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인·허가권자는 인·허가의 처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마. 수도 및 전기 등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기반시설에 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조항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공공기관의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3항). 바. 전략기술보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략산업등의 설비구축 및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된 인·허가,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사.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함(안 제35조제1항제4호 신설). 아. 전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37조의2 신설). 자. 전략산업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A2T0F8X0A2B1T2L4U2R2A2N5W0I6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양향자 (무소속)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협력 또는 경쟁 국가로서의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미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약 68조원(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 2025'를 발표하면서 약 2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하고 반도체 기업에게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며, 대만도 매년 1만여명 규모의 신규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사 정원의 10퍼센트와 석 · 박사 정원의 15퍼센트를 확대하는 등 반도체 관련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 경제 안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 2022년 8월 4일에 시행되는 현행법은 경쟁국들의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관련 산업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도체 계약학과 등에 관련 기업이 지출한 운영비의 세액공제,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시가의 공제혜택 부여,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을 규정하는 등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고급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안 제8조의3제4항 신설). 나.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하여 내국인이 교육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개설하는 학과 및 학부 등(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전단).	매일경제 22.08.02 반도체 투자 때 세액공제, 대기업 20% 中企 30%로 늘린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8/680959/	22.08.04.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다. 우수한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기간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확대함(안 제18조제1항). 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시설에 대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20, 중견기업은 100분의 25,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H2Y0T8L0J2F1R2W4R5Z1T3R1L2V7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홍석준 (국민의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산업기술 등을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고, 벌칙을 상향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36조).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U2O0N5B2O7K0L9K5Y8A3V5Z9E4T4	아시아경제 22.08.05 반도체 기술유출 그 후…국감 도마오른 '솜방망이' 산업기술보호법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0509505580341	22.06.07. 제안 22.07.25. 소관위 회부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 및 상임이사 등 임원에 대한 임면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의 구성이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한국경제 22.08.03. 노동이사제 결국 강행…"권한 더 달라"는 勞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80352141	22.02.03. 일부개정 22.08.04. 시행

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행자 편의 제고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소득 증가 등을 감안하여 여행자 휴대품·별송품의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인도장 인도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용 운동용품 관련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줄여나가기 위해 차별적 언어를 바로잡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면세범위 확대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한 기본면세범위를 현행 미화 600달러 이하에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별도면세범위 중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현행 1병, 1리터(L)에서 합계 2병, 2리터(L)로 확대함 나. 입국장 면세점 판매한도 확대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확대에 따라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한도와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조건으로 판매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함. 다. 장애인용 운동용품에 대한 표현 명확화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함. 라. 장애인 차별적 용어 순화 법령 용어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함. 출처: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9416	중앙일보 22.08.05.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술 2병까지 확대…추석 전 시행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2279	22.08.05. ~ 22.08.19.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경향신문][기사]폭우 속 건설, 복구작업 현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2022.08.09.)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8091310001

주요내용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건설과 복구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함.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철근 절단 작업 중 철근절단기에 감전돼 숨졌으며, 해당 상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임.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설 예정임.

[이데일리][기사]사망사고난 기업서 또 사고…중대재해 발생 기업 불시 감독 (2022.08.0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15766632425352&mediaCodeNo=257&OutLnkChk=Y

주요내용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는 8일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개선 실태확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힘. 주요 감독 항목에는 올해 발생한 사망사고 주요 발생요인에 관한 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여부가 포함됨. 우선 올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 비일상작업, 운반·하역작업의 절차에 관한 사항 및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하고, 경영책임자가 위해요인 확인·개선, 종사자의 의견수렴·개선사항 마련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점검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함.

[중앙일보][기사]도급 계약 논란으로 번질까…중대재해법 실태조사 후 난감해진 서울시 (2022.08.0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2847

주요내용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데, 중대산업재해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혹은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이며,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임. 실제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청 소속 A사업소는 용역사업에 응찰한 도급기업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수준에 20점을 배점하고, 기존 재해 발생 여부를 고려해 20점을 배점함. 하지만 같은 서울시청 소속 B사업소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에 30점, 재해발생수준에 10점을 배점함.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10조 8호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 기준'과 '도급·용역·위탁 업무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토록 규정하는데, 이에 따라 정부가 고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미비한 상태임. 이런 상황이 문제되는 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의 주체로 '경영책임자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점인데, 여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 포함되어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공기업 사장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 발주자(서울시)가 아닌, 도급인(건설사)에게 책임을 묻는 데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설계·제조·설치 관리상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인정받을 경우 관리주체(서울시)의 장에게도 책임을 묻을 수 있음.

[서울신문][기사]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한다 (2022.08.0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03500145&wlog_tag3=naver

주요내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장 노사의 참여를 통해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함. 법 조문에 '충실히'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된 부분을 손질하고, 시행령 5조에 있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에서 '관계 법령'을 더 구체화하는 방식 등임. 이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 사망사고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과 1조 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히며, 현장 노사의 참여를 통해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언급함.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박민재
공동센터장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17
E : parkmj@draju.com



최원혁
변호사

T : 02-3016-8737
E : whchoi@draju.com



권기원
공동센터장

T : 02-3016-8743
E : gwkwon@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기업송무그룹



김수형
파트너변호사

T : 02-563-2900
E : shkim@draju.com

조세그룹



이규철
대표변호사

T : 02-3016-5335
E : kclee@draju.com

IP팀



최종선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88
E : jschoi@draju.com

행정/노무팀



이승택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91
E : stlee@draju.com

중대재해자문그룹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2@draju.com